

2000년 제1차 전문자격사의 보수 실태조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99년 2월의 카르텔일괄정리법 시행으로 보수기준이 폐지된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8개 전문자격사의 보수 실태를 금년 6월부터 7월까지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등에 의뢰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개하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사결과 보수기준 폐지에 따른 가격경쟁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9년 2차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의 보수는 하락하였으며, 다만, 공인노무사, 변리사, 수의사, 행정사의 보수는 상승하였는데 이는 IMF사태 이후 구조조정과정에서 노무사에 대한 수요 증가, 특허 등 각종 출원 증가, 애완견 사육증가 등 수요 증가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부분의 전문자격사의 동일 업무에 대한 최저/최고 보수간의 격차는 최고 50배까지 심화되었는데, 업무내용에 따른 서비스의 차별화가 크지 않은 행정사, 수의사 등 일부 자격사의 보수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가 전문자격사의 적정보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과도한 보수를 지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최저보수는 하락한 반면 최고보수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공인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의 경우에는 보수기준 폐지 이후 업무의 전문화·특성화를 추진함에 따라 가격차별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적인 특성으로는 일반적으로 수요가 많은 서울지역의 보수가 전반적으로 높으며, 고액 보수를 받는 경우도 서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변호사의 경우는 광주, 수의사의 경우는 대구, 부산, 행정사의 경우는 대전, 공인회계사의 경우는 부산, 대전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최저 보수간의 격차도 서울지역이 전반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 서울지역에서의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는 이와 같이 '99년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보수차별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보수기준 폐지에 따라 업무의 전문화·특성화를 추진함에 따른 가격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가격차에 따른 선택의 폭이 확대된 만큼 보수정보에 관심을 갖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유사한 서비스인데 보수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행정사, 수의사 및 보수격차의 변동이 미미한 변호사의 보수수준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며, 보수가 상당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공인노무사, 변리사 및 수의사의 보수는 보수기준의 폐지로 보수수준이 현실화되는 측면과 수요증가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고 향후 변화추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전문자격사별 주요 업무의 보수 수준>

전문자격사 및 업무내용		보수수준(평균 및 최빈보수)	
		'99년 10월	2000년 6월
변 호 사	채권채무사건 보수(경제적 추정이익가액 1억원)	447만원	429만원
	손해배상사건 보수(경제적 추정이익가액 1억원)	518만원	485만원
	폭행사건 보수	462만원	404만원
	교통사고사건 보수	445만원	485만원
	이혼사건 보수	411만원	369만원
공인회계사	개별 재무제표 회계감사 기본보수(자산총액 120억원~300억원 미만)	1,508만원	1,505만원
	회계에 관한 감정 및 증명의 기본보수(자산총액 10억원~50억원 미만)	118만원	155만원
	재무분석에 대한 보수(제시된 자료만을 기초로 하는 경우)	110만원	99만원
세 무 사	기장대행 기본보수(수입금액 1억원~3억원 미만)	12만원	11만원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보수(수입금액 1억원~3억원 미만)	24만원	23만원
공인노무사	간단한 사무대행 보수(노사협의회 설치신고)	9만원	19만원
	사건대리 성공 보수(추정이익가액 3,000만원~5,000만원 미만)	경제적 추정이익 가액의 7.3%	경제적 추정이익 가액의 8.5%
	노무관리 진단 보수(상시 100인 사업장)	213만원	185만원
변 리 사	출원착수금(특허)	77만원	87만원
	출원성공 보수(특허)	64만원	84만원
수 의 사	성대수술	80,000원~ 100,000원 미만	50,000원~ 800,000원 미만
	꼬리절단	1,000원~ 10,000원 미만	20,000원~ 30,000원 미만
	귀절단	70,000원~ 100,000원 미만	70,000원~ 100,000원 미만
행 정 사	각서·매도증서·위임장 등 간단한 서류 작성 보수(매당)	5,000원~ 10,000원 미만	1,000원~ 5,000원 미만
	이유서, 건의서, 진정서 등 작성 보수(세부내용 포함)	10,000원~ 20,000원 미만	20,000원~ 30,000원 미만
관 세 사	수수료율(수출)	0.15%	0.12%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의 보수는 평균보수이고, 수의사, 행정사의 보수는 최빈보수구간이며, 관세사의 수수료율은 평균수수료율임

〈전문사격사별 주요 업무의 보수 격차〉

전문사격사 및 업무내용		최저/최고 보수간 격차	
		'99년 10월	2000년 6월
변 호 사	채권채무사건 보수	10배 (최저보수 100만원, 최대보수 1,000만원)	13배 (최저보수 100만원, 최고보수 1,300만원)
	손해배상사건 보수	15배 (최저보수 100만원, 최고보수 1,500만원)	8배 (최저보수 150만원, 최고보수 1,200만원)
	폭행사건 보수	10배 (최저보수 100만원, 최고보수 1,000만원)	10배 (최저보수 150만원, 최고보수 1,500만원)
	교통사고사건 보수	10배 (최저보수 100만원, 최고보수 1,000만원)	5배 (최저보수 200만원, 최고보수 1,000만원)
	이혼사건 보수	10배 (최저보수 100만원, 최고보수 1,000만원)	10배 (최저보수 100만원, 최고보수 1,000만원)
공인회계사	개별 재무제표 회계감사 기본보수 (자산총액 5억원 미만)	1.6배 (최저보수 200만원, 최고보수 321만원)	20배 (최저보수 25만원, 최고보수 500만원)
	회계에 관한 감정 및 증명의 기본보수 (자산총액 10억원~50억원)	3.3배 (최저보수 60만원, 최고보수 200만원)	40배 (최저보수 20만원, 최고보수 800만원)
	원가계산에 대한 보수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3.3배 (최저보수 120만원, 최고보수 399만원)	10배 (최저보수 100만원, 최고보수 1,000만원)
세 무 사	기장대행 기본보수 (수입금액 50억원 이상)	2.4배 (최저보수 25만원, 최고보수 60만원)	10배 (최저보수 15만원, 최고보수 150만원)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보수 (수입금액 40억원~50억원 미만)	2.2배 (최저보수 100만원, 최고보수 220만원)	12.5배 (최저보수 20만원, 최고보수 250만원)
공인노무사	간단한 사무대행 보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보고서)	5배 (최저보수 2만원, 최고보수 10만원)	25배 (최저보수 2만원, 최고보수 50만원)
	사건대리 성공 보수 (추정이익가액 1억원 이상)	5배 (최저보수 2%, 최고보수 10%)	15배 (최저보수 1%, 최고보수 15%)
	노무관리 진단 보수 (상시 100인 사업장)	10배 (최저보수 50만원, 최고보수 500만원)	50배 (최저보수 10만원, 최고보수 500만원)

변리사	출원착수금(특허)	3.7배 (최저보수 35만원, 최고보수 130만원)	4배 (최저보수 30만원, 최고보수 120만원)
	출원성공 보수(특허)	4.5배 (최저보수 29만원, 최고보수 120만원)	6배 (최저보수 20만원, 최고보수 120만원)
수의사	진찰료	15배 (최저보수 1천원, 최고보수 1만5천원)	20배 (최저보수 1천원, 최고보수 2만원)
	×선 촬영료	8배 (최저보수 5천원, 최고보수 4만원)	10배 (최저보수 5천원, 최고보수 5만원)
	귀 처치료	10배 (최저보수 2천원, 최고보수 2만원)	25배 (최저보수 2천원, 최고보수 5만원)
행정사	각서·매도증서·위임장 등 간단한 서류 작성 보수(매당)	15배 (최저보수 2천원, 최고보수 3만원)	50배 (최저보수 1천원, 최고보수 5만원)
	이유서, 건의서, 진정서 등 세부 내용이 포함된 서류 작성 보수(건당)	27배 (최저보수 3천원, 최고보수 8만원)	50배 (최저보수 2천원, 최고보수 10만원)
관세사	수수료율(내수용)	2배 (최저수수료율 0.10%, 최고수수료율 0.20%)	2.9배 (최저수수료율 0.07%, 최고수수료율 0.20%)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하도급업체의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면제되는 건설업체의 범위를 조정키로 하고, 건설공제조합 등 신용평가기관의 건설업체에 대한 평가 결과 “A등급업체”를 “최상위등급업체”로 변경, 200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건설공제조합의 신용평가 결과 A등급업체가 '97년말 외환위기 이후 20개 업체의 부도가 발생한 반면, A등급업체 수는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신용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등급체계를 변경하여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새로이 평가를 실시한 후 조정된 것이다.

외국사업자도 우리 공정거래법 위반시 의법처리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 12일 국내 및 국외에서의 외국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외국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리지침」을 제정하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사업자들이 외국에서 활동하는 예가 늘어가는데 비례하여 외국 사업자들이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경우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외국사업자들이 불가피하게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EU를 비롯한 세계 각 국은 외국사업자간의 행위라도 그 효과가 자국의 소비자후생과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자국의 경쟁법을 역외적용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도 미국과 EU의 공정거래법의 제재를 받아 왔다. 따라서 국내시장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국법 집행에

는 한계가 있어 외국사업자의 외국에서의 거래 등이라도 우리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을 천명하고 시행하게 된 것이다.

동 지침의 제정으로 외국사업자들에게 우리 경쟁당국과 공정거래법의 존재에 대한 인식 및 우리법 준수의를 제고시키고, 우리 기업이 외국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어 제재를 받는 것이 명백하게 됨으로써 공정거래법 집행에 있어서 상호주의를 관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양자 협정시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외국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조사 및 처리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외국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리지침」은 '부록' (본 지 60면 이하)에 게재하였다.

정유 5개사의 3년간 군납유류 입찰담합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27일, 3년간 군납유류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정유 5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신문공표명령과 함께 총 1,901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토록 하고, 조사를 방해한 에스케이(주), 현대정유(주), 인천정유(주)를 검찰에 고발조치 하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케이(주), 엘지칼텍스

정유(주), 에쓰오일(주), 현대정유(주), 인천정유(주)는 '98년, '99년, 2000년 3개 연도에 걸쳐 군납유류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1차 군납담당 임원들간 모임을 갖고 실무자들이 구체적으로 합의해 오는 입찰안에 대해 그대로 준수하기로 합의하였고, 2차 군납담당 실무자들의 모임에서 연도별로 실시되는 입찰 전체 건에 대

해 유종별 낙찰예정업체, 투찰가 및 들러리가 격, 투찰물량 등 구체적인 합의안을 작성하여 입찰 참가하여 합의한 내용 그대로 낙찰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군납유류 입찰제도 및 예정가격 산정방식에 대해 국방부 조달본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였다.

<3년간 군납유류계약 규모>

(단위 : 백만원)

	SK	LG	S-Oil	현대	인천	계
1998년도	82,901	75,991	64,666	45,616	51,128	320,302
1999년도	49,222	45,457	43,367	28,805	33,279	200,130
2000년도	73,387	47,037	29,639	42,344	0	192,407
합 계	205,510	168,485	137,672	116,765	84,407	712,839

<회사별 과징금 납부금액>

- 정유 5사에 대한 과징금은 각 연도 총 계약금액의 5%를 부과
- 조사에 협조한 LG, S-Oil은 1/3 감면
- 조사를 방해한 SK, 현대, 인천은 1/3 가중

(단위 : 백만원)

	1998년	1999년	2000년	계
S K	21,353	13,342	12,827	47,522
L G	10,676	6,671	6,413	23,760
S-Oil	10,676	6,671	6,413	23,760
현 대	21,353	13,342	12,827	47,522
인 천	21,353	13,342	12,827	47,522
계	85,411	53,368	51,307	190,086

2000년 9월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공정거래위원회는 2000년 9월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변동됨에 따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의거하여 지난 10월 2일자로 변동 내용을 당해 회사와 동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 소속으로 새로 편입된 회사는 회사간 신규채무보증금지와 상호출자금지 등

각종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받게 된다.

2000년 9월중 30대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는 11개사가 신규편입되고, 2개사가 계열제외되어 2000년 10월 2일 현재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 수는 2000년 9월 1일 575개사에서 584개사로 증가하였다.

◆ 2000년 9월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개요 ◆

(단위 : 개사)

구분	2000. 9. 1	편입				제외					증감	2000. 10. 2
		회사 설립	주식 취득	기타	계	합병	매각	청산	기타	계		
전체	575	6	5	-	11	2	-	-	-	2	9	584
1~4대	170	2	2	-	4	1	-	-	-	1	3	173
5~30대	405	4	3	-	7	1	-	-	-	1	6	411

◆ 2000년 9월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내용 ◆

○ 편입 : 11개사(지분취득 5, 회사설립 6)

○ 제외 : 2개사(합병 2)

기업 집단	편입			제외			증감
	회사명	업종명	사유	회사명	업종명	사유	
엘지	서라벌 도시가스(주)	도시가스 공급업	회사설립	엘지정보통신(주)	통신기기·방송 장비 제조업	엘지전자 (주)에 합병	0
에스 케이	(주)엔시 테크놀로지	통신장비 제조업	주식취득	-	-	-	3
	와이더덴 닷컴(주)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주식취득				
	(주)넷츠고	온라인정보 제공업	회사설립				
롯데	(주)스위스 브랑제리	식품 제조 및 도소매업	회사설립	-	-	-	2
	(주)하이스타	수입주류 판매업	주식취득				
한화	(주)한국전자 증명원	전자거래증명서비스 및 솔루션판매업	회사설립	-	-	-	1
한솔	한솔아이 벤처스(주)	창업투자업	회사설립	-	-	-	1
효성	(주)브릿지 솔루션그룹	기업형애플리케이션 구축·관리 서비스업	주식취득	-	-	-	1
코오롱	-	-	-	코오롱 엔지니어링(주)	건축·토목공사업	코오롱건설 (주)에 합병	△1
제일 제당	(주)룩터비	종합유선방송 프로그램 공급업	회사설립	-	-	-	2
	한국케이블티비 경남방송(주)	종합유선방송업	주식취득				
계	11			2			9

